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시 ○○군

내 용

○○○○시 ○○군(○○0과)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 납부·착오 납부하여 과납되거나 부과 착오로 인하여 부과취소, 조세심판원·법원 등의 판결에 의하여 부과 취소하는 오납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 충당과 환급업무를 아래 [표]과 같이 추진하고 따뜻한 기분문화조성으로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표] 지방세 환급금 현황

년도	발생액(천원)	환급액(천원)	미환급액(천원)	기탁액(천원)	비고
합 계	21,542,542	21,524,567	17,263	710	
2014	5,378,066	5,377,864	1,097	105	
2015	3,371,987	3,369,374	1,292	320	
2016	5,312,418	5,310,203	1,964	250	
2017	7,480,071	7,467,126	12,910	35	

※ ○○○○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멸시효 완성분 세입처리 부적정 등

「지방세기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신청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0. 2. ○○○(○○○○시 ○구 ○동3길 1)이 납부한 취득세 등 9,309천원 중 환급금 1건 2,412천원에 대하여 납세자로부터 양도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동소유자인 ○○○(○○○○시 ○○군 ○○면 ○○○○2길 8)에게 환부하였다.

또한 ○○○○시 ○○군 ○○면 ○기2길 9 ○○○ 등 80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결정이후에 환급금에 대하여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 80건 1,036천원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부적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면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과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기부문화 확산 및 미환급 정리율 제고를 위하여 2014. 4. 7.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 및 소액 환급금 기부연계 사업계획을 수립 하면서 소액 환급대상자 중 사회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탁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사회공동모금회에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않고 186명의 개인정보를 사회공동모금회에 제공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위 관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업무 중 소액은 납세자 무관심으로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최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증가로 환급 업무를 더욱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고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로 연계 처리하고 있었다.¹⁾

그러나 ○○○○시에서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 확대 추진계획에 기존 양도(기부)동의서에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문구를 삽입하도록 ○○ 등 5개 구·군에 로 안내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위 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문구가 없는 지방세환급금 성금 기탁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하였다.

1) 그 간 업무처리를 하면서 환급금 권리자의 기부연계 편의 도모에만 치중한 나머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납세자의 기부동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같음한다고 생각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숙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선의의 행정을 펼치고자 한 취지에 대하여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선처를 요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 개인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폐기를 완료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적극행정 면책 결정되었음

조치할 사항 ○○○○시 ○○군수는

[시정] 소멸시효 완성된 80건 1,036천원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